



가정통신문 2022-58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예방 관련 안내

담당
교육연구부 윤다운
☎ 580-3029

우-12417 경기도 가평군·읍 광장로 10

☎ 580-3000(교무실)

<http://gapyong.ms.kr>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과정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예방 관련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 관련 리플렛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 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한다.)

<선행학습 유발행위>

-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적용의 배제

- .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하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교과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뒷장의 Q&A 첨부

Q&A로 알아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분	주체	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학습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공교육정상화법이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상급학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상급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교육은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신입생 적응교육(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1학년에서 학습할 내용을 입학 전에 미리 지도하거나,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입니다.

Q: 방과 후 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며,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금합니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022. 5. 4.

가 평 중 학 교 장